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THE MANI
FRESH FOOD

정보공개서

(주)비비다컴 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더마니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21100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04.0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9.04.

더마니 가맹사업본부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비101, 102, 112호(양정동, 시청센트빌)

대표번호

1600-5494

이메일

jln1986@naver.com

팩스번호

준비중

홈페이지

www.bbda.co.kr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5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9
1. [더마니] 를 시작한 날	
2. [더마니] 연혁	
3. [더마니] 업종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더마니]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5. 바로 전 3년간 [더마니]가맹점 수	
6. [더마니]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바로 전 사업연도 [더마니]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8. [더마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4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5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1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6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8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40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의 주체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41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별첨서류

[별첨1]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별첨2] 가맹금예치신청서

[별첨3]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별첨4]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비비다컴	더마니 외 1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비101, 102, 112호(양정동, 시청센트빌)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9.12.09.	2020.01.20.	박지환	1600-5494	-
	법인등록번호	180111-1255529	사업자등록번호		380-86-0164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박지환	더마니 외 1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B101, 102, 105, 106, 107호(양정동 시청세트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지환	1600-5494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사	(주)제이나 인에프지	오엑스코인 외 1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 12층 1211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20차)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연경	1600-5890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

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주)제이나인에 프지	오엑스피씨	2024.04.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 12층 1211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20차)	김연경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더마니	더마니는 샐러드에 특화된 프랜차이즈로서 덮밥, 볶음밥, 마요, 라면, 떡볶이, 튀김 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한식과 분식 전문점입니다.
상 호	더마니 OO점	보통 지역명으로 표시
기타		더마니 브랜드의 로고, 심볼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2,989,966	2,044,180	945,785	9,674,967	688,804	611,540
2022년	2,410,208	2,075,962	334,245	7,331,324	148,432	169,247
2021년	1,960,866	1,795,867	164,998	3,062,985	44,617	55,389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당사는 가맹사업 외에도 다방면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가맹사업관련 매출액만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상기 매출액은 더마니 가맹사업 매출액을 포함한 당사의 전체사업 매출의 합계액**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기간	상호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박지환	2020.01.20. ~ 현재	(주)비비다컴	대표이사	가맹사업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직전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2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 / 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	---------	----	----	------

가맹본부	(주)비비다컴	가맹사업 경영	2021.05.12. ~2023.04.29. *등록취소	OX스터디&카페 (등록번호:20201812)라는 영업표지의 스터디카페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비비다컴	가맹사업 경영	2020.05.21. ~ 현재	더마니 (등록번호:20211004)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비비다컴	가맹사업 경영	2020.06.22. ~ 2024.04.10.	오엑스피씨 (등록번호:20230873)라는 영업표지의 PC방사업 경영
계열사	(주)제이나인에프지	가맹사업 경영	2024.04.11. ~ 현재	오엑스피씨 (등록번호:20230873)라는 영업표지의 PC방사업 경영
계열사	(주)제이나인에프지	가맹사업 경영	2019.11.28. ~ 현재	오엑스코인 (등록번호:20230970)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서비스(코인노래방)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	-	-	-	-	-

※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더마니] 를 시작한 날: 2020.05.21.

2. [더마니]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비비다컴	더마니	박지환	2020.05.21. ~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B101, 102, 105, 106, 107호(양정동, 시청센트빌)

3. [더마니]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더마니	한식	덮밥, 볶음밥, 마요, 라면, 떡볶이, 튀김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더마니]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3.12.31.			2022.12.31.			2021.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75	75	-	44	44	-	33	33	-
서울	9	9	-	5	5	-	4	4	-
부산	40	40	-	21	21	-	15	15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1	1	-	2	2	-	1	1	-

경기	2	2	-	1	1	-	2	2	-
강원	1	1	-	-	-	-	-	-	-
충북	1	1	-	1	1	-	1	1	-
충남	1	1	-	-	-	-	-	-	-
전북	1	1	-	1	1	-	-	-	-
전남	5	5	-	3	3	-	2	2	-
경북	-	-	-	-	-	-	-	-	-
경남	9	9	-	9	9	-	7	7	-
제주	5	5	-	1	1	-	1	1	-

5. 바로 전 3년간 [더마니]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년	44	34	-	3	-	75
2022년	33	17	-	6	1	44
2021년	20	21	8	-	3	33

6. [더마니]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더마니]외에도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가맹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3.12.31.	2022.12.31.	2021.12.31.
가맹본부	(주)비비다컴	믹스토랑	20212256	서양식	23/0	16/0	1/0
가맹본부	(주)비비다컴	오엑스피씨	20230873	PC방	20/0	20/0	33/0
계열사	(주)제이나인에프지	오엑스코인	20230970	기타서비스 (코인노래방)	11/0	11/0	11/0

7. 바로 전 사업연도 [더마니]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단위:천원, VAT미포함)						비고
		연간평균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평균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75	210,033	23,965	448,035	44,803	62,315	8,417	산출:59곳
서울	9	200,955	21,530	282,032	28,203	110,986	12,331	산출:6곳
부산	40	195,100	21,518	323,829	32,382	67,660	8,417	산출:30곳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세종	1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경기	2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강원	1	-	-	-	-	-	-	-
충북	1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충남	1	-	-	-	-	-	-	-
전북	1	해당없음	-	-	-	-	-	-
전남	5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경북	-	-	-	-	-	-	-	-
경남	9	237,447	25,970	410,487	41,048	62,315	12,463	산출:7곳
제주	5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은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더마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의 직전연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영업기간
2023년	75개	614일(1년 7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지역본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수단은 구분이 어려워 총액만 기재하였고 그 근거는 손익계산서상의 광고선전비입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VAT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비	-	2023.01.01.~12.31.	75,221	75,221	-	-
판촉비	-	-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지점	전화번호
중소기업은행	전지점 및 온라인뱅킹	1588-2588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 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은행지점 방문시	①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수령(가맹계약서 별첨) → ② 은행에 방문하여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③ 가맹금예치증서 수령 및 보관
인터넷뱅킹 이용시	①인터넷뱅킹 접속 후 로그인 → ② 부가서비스 - 가맹금 인터넷 예치서비스 - 가맹점사업자 클릭 → ③ 가맹본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④ 가맹본부 확인 → ⑤ 가맹점사업자 정보 입력 및 예치금액 입력 → ⑥ 가맹금 예치완료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상기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VAT포함)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330만원	계약체결과 동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 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2) 보증금

당사는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7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VAT 포함)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가맹비	330만원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16.5㎡기준 (5평)	3.3㎡당 금액			
인테리어	자율	자율	-	계약체결과 동시	발주 또는 시공 전 계약취소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
설비	자율	자율	-			
집기	자율	자율	-			
간판	자율	자율	-			
초도물품비	협력업체	200만원	-			
총계		200만원				

① 위 표는 **삽인삽 형태로 가맹점을 개설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귀하가 사업장을 운영중이고 삽인삽을 목적으로 [더마니]를 도입하는 거라면 기존 인테리어와 설비, 집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삽인삽이 아닌 신규로 가맹점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설비, 집기 등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귀하가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인테리어를 시공하거나 설비 등을 구입하면 됩니다.

②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점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상기 비용 외 점포 상황에 따라 **내부철거, 닥트, 전면원도우 및 창호신설, 전기증설, 화장실, 냉/난방, 가스 증설, 소방, 대형건물등의 특수요구사항, 컴퓨터 등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최소 점포 기준 16.5㎡ 이상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점포의 입지선정과 계약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 기준	교육·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특별한 기준 없음. 보건증 소지자일 것
종업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지급대상
로열티	월 11~44만원	익월 5일	-	가맹본부
인터넷	별도 계약	업체와 협의	-	자율
지연이자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가맹본부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1.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광고/판촉비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개점 후 교육비	자세한 내용은 VII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금액은 귀하의 가맹점 PC 개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가맹점 내 PC 개수	로열티 (VAT포함)	지급기한
55대 이하	11만원	매월 26일 지급
56대~80대 이하	22만원	
81대~140대 이하	33만원	
140대 초과	44만원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1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나 권리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맹사업 상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가맹본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제시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관련조문 가맹계약서 제38조)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더마니”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영업표지의 범위에는 가맹점 내외관에 표시된 “더마니”의 로고·심볼·이미지, 간판, 메뉴, 사업자등록증 상호, 배달어플 업체정보,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전화번호(114 등록 및 온라인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등이 해당되며,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④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다.
- 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상기 품목 중 거래형태가 **강제인** 품목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사업을 금지합니다.

※ 상기 품목 중 거래형태가 **권장인** 품목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거나 귀하가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구입할 수 도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당사가 요구하는 디자인, 규격, 사양, 품질 등에 부합해야하며 사전에 당사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당사는 신메뉴 개발, 고객의 니즈, 사업전략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메뉴의 판매

①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재고하기 위하여 메뉴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지정된 메뉴를 판매하지 않거나, 지정된 메뉴 외 다른 메뉴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상품명	권장판매가격	위반시 책임
밥류	3mm김치대패덮밥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입지, 상권을 고려하여 개점 전 알려드립니다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위반시 아래의 절차를 따름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상품공급 중단 또는 계약 해지
	3mm데리대패덮밥		
	레트로김치/새우볶음밥		
	불막창볶음밥		
	부대찌개/사천중화 볶음밥		
	빠다장조림덮밥		
	볶음김치돈까스덮밥		
	스팸강정후라이토핑밥		
	통소시지 시그니처 함바그		
	돈까스커리덮밥		
	탠더스틱커리덮밥		
	버터계란덮밥		
마요	치킨/스팸 스크램블마요 어니언마요시리즈(스팸,함박,치킨,돈까스)		
분식	베이컨부타동		
	더마니 라면(어묵,치즈,계란,만두,뽕초,떡)		

	더마니 우동(어묵,만두,팽초,떡)		
	더마니 떡볶이(매장용)		
스낵랩	더마니 스낵랩(칠리치킨,통소시지,참치샐러드)		
	스낵랩(조식,더블베이컨)		
핫도그	더마니 핫도그(오리지날,크림어니언,양념치킨,캘리쉬)		
	더마니핫도그(요술,누텔라)		
닭강정	눈꽃닭강정		
	양념떡닭강정		
튀김	크리스피 치킨텐더/치즈 치킨텐더		
	소떡소떡(케첩머스타드/양념치킨)		
	감자튀김/치즈감자튀김		
	매콤김말이		
	빠삭쥬포		
	통통소세지 시리즈		
	납작만두		
	부시 타코야끼		
	고기,김치 팡팡 찐만두		
	꿀가득호떡		

② 당사가 귀하에게 지정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가 공급한 상품 및 원/부재료를 타 브랜드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기타 자영업자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의 점포가 아닌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인근 [더마니] 가맹점사업자의 물품 부족 비상 시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고 **판매메뉴 및 가격은 상기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하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덮밥, 볶음밥, 마요, 라면, 떡볶이, 튀김 등 한식과 분식을 주요상품으로 판매하는 가맹사업	더마니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서에 기재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네이버지도-거리측정 기준 귀하의 점포소재지로부터 반경 500m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	

※ 영업지역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위치한 상권을 고려하여 협의가능합니다.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학교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의 집합건물을 말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

둘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직전연도 말 기준 [더마니]영업표지로 국내에서 판매된 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비중이 기재된 채널은 국내 총 매출액에서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한 비중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오프라인 전용상품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온라인 전용상품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① [더마니]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2년] 씩 연장됩니다.

2)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문 제36조 제1항 (계약갱신 거절 사유)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계약의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조문 제36조 (계약의 재계약 절차)

- ①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V-6-2)의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집니다.
- ③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가 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5.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⑥ 귀하는 계약갱신시 다음 각 호를 계약갱신일 전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귀하는 당사에 대한 원·부재료·상품대금 및 기타비용 등 모든 금융상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여야 합니다.
 2. 계약갱신시 당사와 귀하는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⑦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별다른 의사표시를 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자동갱신)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조문 제37조 제1항 (계약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비, 교육비 등 최초가맹금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POS의 구입 및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에 가맹본부 임직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장위치변경을 한 경우
7. 영업상 비밀공개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할 원·부재료 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개량·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설비 및 상품, 원·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12.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1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 또는 폐업처리하거나 [더마니]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16. 배달어플 리뷰를 통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이 접수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아 [더마니]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귀하는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 부재료 등의 공급, 약정한 경영지원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귀하가 가맹사업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제2항 (즉시해지 사유)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가.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귀하는 가맹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합리적·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제4항 (즉시해지 사유)
1. 가맹본부가 파산한 경우 2.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가맹본부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에 필요한 절차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양도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5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양수인 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7-2)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의 존속 중은 물론 가맹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귀하와 제3자의 명의(주주로 참여하는 것 포함)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소재지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내 [더마니]와 동일 및 동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제한기간	제한지역
덮밥, 볶음밥, 마요, 라면, 떡볶이, 튀김 등을 주요상품으로 판매하는 외식업	가맹계약의 존속 중, 가맹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점포소재지가 위치한 광역시방자치단체(시·도)내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①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협의	연중무휴	※ 상권에 따라 사전협의

②가맹점사업자는 연중무휴 영업을 원칙으로 하며,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연속하여 3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습니다.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 또는 정보공개서 상에 영업시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켜야 합니다.

③가맹점사업자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나 영업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상권에 따라 상이	직접 근무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자

※ 권장 종업원 수는 상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Quality(메뉴의 표준화)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Service(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Cleanliness(청결)	주방위생, 매장청소현황 등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 및 지역단 위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100%	-	-	-
	상품 광고 + 브랜드 광고	50%	50%	광고 계획 공고 → 광고실시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사전동의 또는 사전약정 절차 진행 → 광고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부담 광고비 확정	-
	상품 광고 + 브랜드 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50%	50%		
공동 판촉 활동		기획비용	가맹점에서 소요되는 판촉물의 제작비용 및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	행사계획 공고 →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사전동의 또는 사전약정 실시 →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가맹점사업자 선정하여 최종 부담액 확정	
가맹점 개별 광고·판촉		-	100%	가맹본부에 광고·판촉계획안 발송 → 브랜드 통일성 여부 검토 →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24조 (광고)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나 판촉의 내용과 문안, 기타 시행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계약조문 제25조 (판촉)
④ 가맹점사업자는 자기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판촉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나 판촉의 내용과 문안, 기타 시행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9조 (영업비밀 보호)
①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정보(거래처 정보 포함)를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대여, 제공할 수 없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1조 (손해배상)
①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

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③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7일이내의 경우 위약금 **금 일백만원**, 그 이후의 경우 **금 삼백만원**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금액 중 상계처리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위약금 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 제1항(자점매입)을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 당 위약별 **금 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가맹점사업자가 제37조 제1항 제15호를 위반한 경우 위약별로 **금 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가맹점사업자가 제38조 제1항(계약의 종료와 조치)을 위반한 경우 위약별 지체 일(日) 당 **금 삼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⑧가맹점사업자가 제39조 제3항(경업금지 의무)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 동일 및 동종영업으로 경업한 경우 위약별로 **금 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가맹점사업자가 제39조 제3항(경업금지 의무)을 위반하여 본 계약 기간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소재지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내 동일 및 동종영업으로 경업한 경우 위약별로 **금 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⑩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종료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 가맹본부에게 사전 통지한 뒤 합의 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종료에 합의가 되었으나 별도의 합의기준이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가맹점사업자가 37조 제1항,제2항 계약의 해지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위약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한다)

잔여 가맹계약 일 수 X 3만원

⑪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상담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0	
점포개발	- 입지선정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5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4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D-34	
점포실측/설계	- 인테리어계약 체결	D-32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D-34	D-31~6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 기기장비 및 POS 조작 - 조리교육	D-20~10	
개점 준비	- 인테리어 시설, 집기, 초도물품 등 본사 직원 및 점주 체크	D-2~1	
개점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 가맹사업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2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 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 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 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 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더마니”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최소시간	비용(VAT포함)	필수여부
최초교육 (개점 전)	점포운영, 고객응대, 서비스, 조리교육 등	실습교육	3일	면제	필수
신메뉴교육 (개점 후)	신메뉴 조리방법, 보수교육 등	실습교육	교육별 상이	실비	신메뉴개발시 또는 보수교육 필요시

2.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더마니”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7조 (계약의 해지)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계약의 갱신과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제14조 (개시 승인)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VAT 미포함)	비고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 사업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1]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재무제표(가맹본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지2]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점사업자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2. 18.>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 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 소(사무소)	전 화 번 호	
가맹본부	상 호(영업표지) 주식회사 비비다컴(더마니)		
	성명(대표자) 박지환		
	주 소(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B101, 102, 105, 106, 107호(양정동, 시청센트빌)	전 화 번 호 1600-5494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4]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가맹희망자 보관용)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성명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주소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 서	제 공 일 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제 공 장 소		
	제 공 방 법	☐ 직접전달	
	제 공 받 은 가 맹 희 망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수령사실 자필확인란	상기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작성	(주)비비다컴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	-------------	------------

-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가맹본부 보관용)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성명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주소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 서	제 공 일 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제 공 장 소		
	제 공 방 법	☐ 직접전달	
	제 공 받 은 가 맹 희 망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수령사실 자필확인란	상기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작성	(주)비비다컴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	-------------	------------